

15. 만약 연방 정부와 사업을 하는 회사가 본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귀하께서 재향군인이고 보호받는 재향군인의 신분으로 인해 직장 또는 구직 신청하는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THE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Washington, D.C. 20210
1-800-397-6251
OFCCP-Public@dol.gov
www.dol.gov/ofccp

본 정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서 설명된 프로그램에 관한 실제 법과 규정을 대체할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U.S.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NUE NW | WASHINGTON, DC 20210 | tel: 1-800-397-6251 | TTY: 1-202-693-1337 | www.dol.gov/ofccp

귀하 권리에 대한 이해

보호받는 재향군인 권리 정보지

OFCCP는 재향군인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 사무국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OFCCP)는 1974 년의 베트남 참전용사 재적용 보조법(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의 차별 철폐 조치 조항을 집행합니다. 때론 VEVRAA 또는 Section 4212 라고 칭하는 이 법은 연방 정부와 사업을 하는 고용주들이 보호받는 재향군인들을 모집, 채용, 승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는 또한 이러한 회사들이 채용, 해고, 임금, 혜택, 업무 할당, 승진, 일시 해고, 직업 훈련, 기타 고용 관련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참전 재향군인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1. 보호받는 재향군인의 신분에 근거한 고용 차별은 무엇입니까?

보호받는 재향군인의 신분에 근거한 고용 차별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섹션 4212 하에서의 보호받는 재향군인 범주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귀하를 피고용인 또는 구직 신청자로서 부당하게 대우할 때 발생합니다.

2. 섹션 4212 하에서의 "보호받는 재향군인"은 누구입니까?

아래에 설명에 재향군인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귀하는 섹션 4212 하에서의 "보호받는 재향군인"입니다.

• 장애 재향군인

미국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했고 재향군인원호장관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이 관장하는 법규하에서 장애 보상(또는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퇴역금을 받는 자는 제외)의 수혜 자격이 있거나 근무와 연계된 장애로 인해 현역에서 제대 또는 전역한 재향군인.

• 기타 보호받는 재향군인

전쟁 또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관장하는 법하에서 캠페인 휘장이 승인된 캠페인 혹은 원정대에서 미국 군대의 현역으로 복무했던 재향군인.

• 최근에 퇴역한 재향군인

미국 군대의 현역에서 재향군인으로 전역 또는 제대한 날로부터 3년 기간 중에 퇴역한 재향군인.

• 미군훈장(Armed Forces Service Medal)을 받은 재향군인

미국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 미국 군대 작전에 참여하여 미군훈장을 받은 재향군인.

2003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일부 연방 계약업자 및 하부계약업자의 경우, 섹션 4212 하에서의 보호받는 재향군인의 범주들은 약간 다릅니다. 귀하의 군 복무가 귀하를 보호받는 재향군인의 자격이 되게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제공된 연락처 정보 중 하나를 이용하여 OFCCP에 연락해 주십시오.

3.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의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섹션 4212 하에서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 귀하에게는 차별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재향군인 신분으로 인해 고용이 거부되거나, 괴롭힘, 좌천, 해고, 적은 임금 수당, 또는 부당하게 대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피고용인에 장애 재향군인인 경우 요청하시면 귀하의 고용주는 크게 어렵거나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한 귀하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귀하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재향군인 구직 신청자일 경우 해당 고용주는 귀하께서 구직 신청하고 채용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신청 과정 중 반드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합리적인 편의는 이행하기 아무리 어렵거나 고비용이 따르지 않는 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U.S.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NUE NW | WASHINGTON, DC 20210 | tel: 1-800-397-6251 | TTY: 1-202-693-1337 | www.dol.gov/ofccp

4. OFCCP는 무엇을 보호합니까?

OFCCP는 신청인과 연방 정부 계약업자 및 하부계약업자의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연방 정부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장애, 보호받는 재향군인의 신분, 근거한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OFCCP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 인구의 약 25%는 연방 정부와 사업을 하는 회사에 의해 고용됩니다. 여기에는 연방 및/또는 연방 투자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 은행, 교육 포장 공장, 소매점, 제조 공장, 회계 법인, 건설사, 등등의 피고용인들이 포함됩니다.

고용 기회 검색

5. 직장 찾는 것을 도와주는 구직 서비스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재향군인이 직장 또는 기타 다른 서비스를 찾는 것을 돕는 소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지역 고용 서비스 사무소 또는 직종 계획, 구직 검색 자료, 직업 훈련, 채용 모집하는 고용주에게 소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직업센터(One-Stop Career Centers). 가까운 지역 고용 서비스 사무소 또는 원스톱직업센터는 CareerOneStop 웹사이트인 <http://www.servicelocator.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이 웹사이트를 후원합니다.
- 국립리소스명부(National Resource Directory, NRD)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을 재향군인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 연계하는 웹사이트입니다. NRD는 고용 기회, 혜택 정보, 교육 및 교육 기회들에 대한 이용을 제공합니다.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파트너십을 맺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재향군인원호국(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군사서비스(Military Services)가 이 웹사이트를 후원합니다. NRD는 온라인 주소인 <https://www.nationalresourcedirectory.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 섹션 4212는 연방 계약업자들이 보호받는 재향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까?

연방 계약업자들은 반드시 지역 고용 서비스 사무소 또는 원스톱직업센터(One-Stop Career Center)에 구인 공고를 하여 보호받는 재향군인들이 이러한 구인 모집에 있어 우선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주들은 고용주들이 구인을 공고하고 구직자들이 채용 모집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구직 뱅크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 구인 공고를 찾으려면 <http://careeronestop.org>에 가서 CareerOneStop 을 방문해 주십시오. 또한 고용주들은 유자격 재향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있어 지역 재향군인 그룹들과 협조하도록 권장됩니다.

7. 보호받는 재향군인들은 채용 시 우선순위를 받습니까?

연방 정부는 공무원직을 채용할 때 장애 재향군인, 특정 기간 또는 군 캠페인 중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재향군인에게 일반적으로 채용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연방 정부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포함한 사설 고용주들은 채용에 있어 재향군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향군인 우선 법은 재향군인의 구직을 보장하지 않고, 승진, 전직, 재배치, 복직과 같은 내부 기관 조치에서 재향군인에게 우선권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고용주는 본인이 군 연금을 받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낮은 봉급을 제안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피고용인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용주는 귀하가 군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귀하의 봉급을 감소시키거나 임금을 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장애 재향군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구하기

9. "합리적 편의"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편의"는 장애 재향군인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용의 혜택 및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직장 또는 업무 수행하는 일상적인 방법에서 이루어진 조정 또는 변경입니다. 합리적인 편의는 기본 업무 기능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 재향군인이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합리적인 편의"는 다른 피고용인들 또는 구직 신청자들에게 제공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의는 장애의 성격과 일자리 유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편의는 귀하 고용주에 과도한 비용 초래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파괴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귀하 고용주는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편의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는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 고용주는 접근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승강기 대신 경사 램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고용주가 채용 과정 중 제공하여 나중에 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편의"의 일부 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합리적 편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편의를 아래에 열거해 보았습니다.

- 대형 인쇄, 점자, 오디오 테이프와 같은 이용 가능한 형식의 서면 자료 제공.
- 근무 일정 조정 또는 변경.
- 낭독자 또는 수화 통역사 제공.
- 채용박람회, 면접, 시험, 기타 다른 신청 과정의 일부를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주최.
- 직원 회의를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주최.
- 장비 및 기구 제공 또는 변경.
- 정책 및 절차 조정 또는 변경.
-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작업 환경 변경.

11. 합리적 편의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피고용인 또는 구직 신청자로서 편의를 요청하는 특별한 과정은 없습니다. 요청을 할 때 특별한 단어 또는 "합리적 편의"라는 단어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귀하 고용주에게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의 조정 또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귀하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충분한 정보를 귀하 고용주에게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편의를 필요로 할 경우, 장애로 인해 신청 또는 면접 과정에 있어 변경 또는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반드시 귀하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예: 가족 구성원, 친구, 의료인, 직업 코치와 같은 기타 대리인). 요청을 한 후 해당 고용주는 귀하에게 특정 양식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타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적시에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를 구하기 위해 귀하의 전체 의료 또는 정신 건강 기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는 편의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만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만 제기

12.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의 본인 신분, 근거한 차별 불만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FCCP의 웹사이트를 통해 OFCCP 조사원과의 면담 시 양식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게 되는 양식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 귀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OFCCP 사무소에서 직접 양식서 작성. 또는
- 작성한 양식서를 귀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OFCCP 지역 사무소에 우편으로 우송.

양식서는 <http://www.dol.gov/ofccp>에서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거나 모든 OFCCP 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인쇄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찾으려면 다음 주소로 가서 온라인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www.dol.gov/ofccp/contacts/ofnation2.htm.

또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재향군인 고용 및 훈련국(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 또는 지역 고용 서비스 사무소 또는 원스톱직업센터(One-Stop Career Center)에서 지역 재향군인 고용 담당자(Local Veterans' Employment Representative)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 불만 제기로 인해 해고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용주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귀하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괴롭힘, 위협, 협박, 강압, 또는 귀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차별로부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14. 만약 본인이 고용 차별의 희생자로 밝혀질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하는 만약 차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귀하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귀하를 있게 하는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고용, 승진, 복직, 체불 임금 지급, 재배치와 같은 합리적인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